



## 서울남부지방법원

### 제 3 - 3 형 사 부

#### 판 결

사 건	2021노2210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1. A 2. 주식회사 B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재호(기소), 신지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천우(피고인들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범제
원 심 판 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0. 6. 선고 2020고정1968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29.

####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 이 유

##### 1. 항소이유의 요지



## 가. 사실오인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의 컴퓨터에 '2016년 버전 F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나 누가 설치했는지 알 수 없고, 피고인 회사가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는 위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설치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A가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들 각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2. 판단

###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회사는 정보통신기기 설계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경 서울 금천구 C, D호 주식회사 B 회사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E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출품·판금설계·구조해석·산업디자인 등에 사용되는 이 사건 프로그램 제품을 정품 구매 없이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위 회사 내 컴퓨터에 설치한 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 다. 당심의 판단

1)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권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14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A가 2019. 7. 17.경 이 사건 프로그램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취득하여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직접 설치한 후 사용함으로써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고,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양벌규정인 저작권법 제141조에 따라 피고인 회사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9. 7. 17.경 피고인 회사의 사업장 내 컴퓨터 1대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인 회사가 피해자로부터 위 프로그램 정품을 구매한 적은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회사의 직원 중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한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고, 특히 피고인 A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 침해의 방법으로 설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이 유죄의 이유로 실시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17년경부터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 서버 등을 관리한 직원 I이 경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고, 누가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피고인 회사가 제품개발시 외주를 주다가 비용이 많이 들어 피고인 회사 자체에서 직원을 채용하여 팀을 운영하다보니 필요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20면), ② 2019년에 입사하여 2020. 2.까지 피고인 회사에 근무한 J가 경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입사할 때부터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다"고 각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0면), ③ 소프트웨어 판매 영업을 하는 H은 피고인 회사 직원 I으로부터 "단속을 피하려고 하드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사용하는데, L와 E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점, ④ 불법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소위 '크랙')을 사용할 경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인 피해자 회사의 서버에 저장이 되는데(증거기록 제3권 제193면), 피고인 회사에 설치된 컴퓨터에서 불법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2019. 11. 1. 07:36:36초(미국 동부 표준시)에 실행된 기록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3권 제128면) 등은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불법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일 뿐이고,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불법복제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의 컴퓨터에



설치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 A는 경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을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누가 설치했는지 모른다. 업무의 담당자가 아니면 일일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하는지까지 알지 못한다. 퇴사를 하고 나면 직원 신상에 대한 정보는 퇴사 후 일정기간 후 폐기하기 때문에 2016년부터 2017년경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40~41면), 피고인 회사 직원 I도 경찰에서 '이 사건 프로그램의 설치 사용에 관하여 대표자인 피고인 A는 알지 못하였고, 당시 총무부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22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를 사용하였던 피고인 회사 직원 J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누가 설치하였는지 모르고, 2019. 1. 28.경 피고인 회사에 입사하였을 때 이미 이 사건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51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 컴퓨터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설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인 A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저작권법위반 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회사의 저작권법위반죄 역시 인정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1.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다.

####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의 다.항에서 본 것처럼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훈      \_\_\_\_\_

                                 판사      송인우      \_\_\_\_\_

                                 판사      김연화      \_\_\_\_\_